

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준비사항

1. 위탁 계약 체결 전 조치사항

□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

○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(운영기간: '15. 5. 1. ~ '16. 2. 29.)

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(예방접종 시행의사)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(<http://edu.cdc.go.kr>)에서 교육 이수(붙임2 참조)

- 교육 과정

- 신규 참여의료기관 대상 교육과정: '2기[기본교육]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(2015)-8차시'
-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대상 교육과정: '1기[기본교육]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(2015)-4차시'

- 교육 내용

- 노인 인플루엔자 신규 참여의료기관(8개 차시)

차시	내용
1	2015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
2	예방접종의 원칙
3	성인예방접종
4	고령자에서의 예방접종
5	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
6	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
7	백신의 보관과 취급
8	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

-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(4개 차시)

차시	내용
1	2015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
2	예방접종의 원칙
3	성인예방접종
4	고령자에서의 예방접종

○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관련 사전 자율점검 실시

- 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, 백신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등 점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 실시 후 **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(전자문서 가능)<붙임 5>** 작성
 - * 전산시스템에서 사전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가능
-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면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노인 인플루엔자 **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생략**

<사전 자율점검 항목>

- 일반사항: 인터넷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, 예방접종예진표 및 예방접종안내문(VIS) 비치 등
- 사업이해: 사업대상자(만 65세 이상), 백신 조달 및 납품방법 등
- 실시기준: 대상자 확인, 예진표 작성, 과거접종력 확인,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,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, 접종 후 20~30분간 이상반응 관찰, 예방접종안내문 제공, 이상반응 신고제도 설명 등
- 기록보존: 예진표 보관기간(5년), 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
- 비용상환: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등
- 백신관리: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,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, 백신 보관 온도 2~8℃유지, 주기적 온도 점검(1일 2회), 백신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, 유효기간경과 백신 폐기처리 등

다. 위탁계약 체결

○ 계약 방식

- **서면계약:**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서면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
- **전자계약:** 「전자서명법」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전산시스템 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위탁계약 체결
 - * 전자계약 방식의 위탁 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 의료기관 및 지자체(시군구청)의 기관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(기관 인증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검증)

○ 전자계약 절차(붙임 3 참조)

- 계약 서류 제출: '전산시스템'에서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(기본교육 수료증, 통장사본, 사전 자율점검표) 와 함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제출
- 계약 체결: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서 제출(전자계약 요청) 후 보건소에서 등록된 문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면 계약 완료

○ 계약 기간 : 3년 (계약기간 만료 후 보수교육 이수 확인 후 재계약(갱신) 가능)

○ 계약 서류

① 기본교육 수료증

-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증 발급
 - *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(예방접종 시행의사)은 질병관리본부 교육 시스템(<http://edu.cdc.go.kr>)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시스템의 '수강과정 → 수강종료과정'에서 기본교육 수료증 출력
-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시에는 계약신청 화면의 '교육수료정보'에서 기본교육 수료여부 확인 가능. 단, 교육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 수료증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업로드 필요

② 통장사본

-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사본으로 예방접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 개설 필요
 - * 노인 인플루엔자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모두 참여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 가능
 - * 전자계약의 경우 통장사본을 이미지파일로 변환(스캔 등) 후 업로드

③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(전자문서 가능)<붙임 5>

라. 위탁계약 체결 후 조치사항

-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'위탁의료기관 지정서'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
 - * 전자계약의 경우 전산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'위탁의료기관 지정서' 출력 가능

마.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(①~⑧항은 위탁계약조건임)

-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(의사)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.
 - 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)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.
-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,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'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리지침'을 준수한다.
-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
- ⑦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(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같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)은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'예방 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'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 체결년도에는 계약 전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, 접종기록을 먼저 전산 등록한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.

- ⑨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를 확인하고,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바.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

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
 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
 -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
 -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
-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해지 신청서<붙임 5>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
 - 계약 해지일 전 비용 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
-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계약 해지로 같음

